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통과해 가지고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본회의에, 이런 기간이 막대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적에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의 위치에 사야 하는데 굉장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요 서울시 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공공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그 필요에, 위치에 따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세제상의 양도세를 전체 감면은 못해도 50%라도 해준다는가 이런 혜택이 가면은 이게 굉장히 주민들도 어차피 팔 바에는 이런 혜택이라도 받는데 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시에 건의해서 공공재산,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것은 건의해서 하는 방법을 없습니까?

○ **財務局長 朴贊守** 그러한 것을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아마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를, 이것은 區廳하고 해도 계약은 私人間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裕顯委員** 이것은 분명히 공공재산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沈載昶** 質疑하실 委員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質疑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宣布합니다.

(15時 43分 散會)

○ **出席委員**

沈 載 昶 尹 東 鉉 金 星 煥

金 裕 顯 朴 炆 緒 俞 南 烈
尹 正 鏞 李 康 泌 曹 熙 太

○ **出席專門委員**

金 建 在

○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朴 贊 守
監 查 室 長 文 燁 昇
總 務 課 長 金 石 鳳
生活體育課長 鄭 秀 鏞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의안 번호 | 226 | 제출년월일 : 1993년 7월 26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제2980호, 1993. 1. 13)가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 운영 정구장 사용료 징수조례(제158호, '91. 8. 1)를 시립운동시설 기준 요금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정구장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함.

2. 개정 주요골자

(별표1)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평일주간기준)
체육경기 : 1면당 4,400→8,000원으로 상향조정.
체육이외의 행사 : 44,000→80,000원으로 상향조정.
(별표2)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평일 2시간기준)
1면당 사용료 1,960원→3,400원으로 상향조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제2980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평일주간 기준)중 망원동 테니스장의 체육경기관의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을 면당 “8,000원기준, 5면 40,000”으로 하고 체육이의 행사란의 “44,000원”을 “80,000”으로 한다.

<별표 2> 테니스장개인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중 사용료란의 “1,960원”을 “3,4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의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 | 개 정(안) | | |
|---------------------------------------|--------------------------------|---|---------------------------------------|--------------------------------|---|
| <별표 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 기준) | | | <별표 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 기준) | | |
| 구장별 | 체육경기 | 체육이의행사 | 구장별 | 체육경기 | 체육이의행사 |
| 망원동 테니스장 |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 | 44,000원 | 망원동 테니스장 | 면당 8,000원 기준, 5면 40,000원 | 80,000원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별표 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 기준) | | | <별표 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 기준) | | |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 1면당 | 1,960원 | ○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 ○ 학생,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 1면당 | 3,400원 | ○ ○ (삭제) (삭제) |